

### **III. 전무출신 규정**

#### **목 차**

- 1. 전무출신 규정 제정 ( 53. 11. 4 교규 제22호) .....29면**
- 2. 전무출신 규정 개정 ( 57. 1. 11 교규 제28호) .....37면**
- 3. 전무출신 규정 개정 ( 68. 2. 22 교규 제62호) .....45면**
- 4. 전무출신 규정 개정 ( 70. 9. 20 교규 제70호) .....53면**
- 5. 전무출신 규정 개정 ( 77. 2. 12 교규 제95호) .....61면**
- 6. 전무출신 규정 개정 ( 79. 1. 13 교규 제102호) .....70면**

# **전무출신 규정**

## **1. 전무출신 규정 제정 ( 53. 11. 4 교규 제 22호)**

### **제 1장 총 칙**

- 제 1조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본교에 공헌한 자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 제 2조 전무출신의 의식 용금은 교종에서 수용하나 달리 급료 지불을 받지 아니 한다.
- 제 3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30개를 수지한다.
- 제 4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교직원외에는 다른 직무를 겸대하지 못한다. 단, 본교 발전상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수위단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 제 5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사업외에는 다른 사업을 병영하지 못한다.
- 제 6조 전무출신자의 활동중 소득은 전부 본교의 수입으로 한다.
- 제 7조 전무출신은 수위단회 결의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 **제 2장 자 격**

- 제 8조 전무출신은 다음의 각항으로써 그 자격을 인증한다.
1. 사가에 구속이 없이 그 임무를 전일 이행하는자.
  2. 임무의 취지가 급료에 있지 아니하고 의무감으로써 이행하는자.
  3. 본교의 명령에는 호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시 그 지정임무에 노력하는자.
  4. 신성이 견실하여 본교외에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하는자.

5. 공부 사업 양방면으로 항시 공덕이 드러 나는자.
6. 기타 전무출신에 관한 모든 규정을 일일이 준수 하는자.

제 9조 전조에 해당된 자격도 다음의 각항에 해당 된자는 전무출신을 지원할 수 없다.

1.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 없는자.
2. 전항의 학력이 없는자로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도 없는자.
3. 불구·폐질 및 전염병이 있는자.
4. 본교 교리에 대하여 신근이 서지 못한자.
5. 세상에 드러난 악행이 있는자.
6. 연령 만 18세 미만된자와 60세 이상된자.

제10조 전조의 각항에 해당된자로서 종법사의 특인이 있을때에는 제 8조 각 항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 제 3장 연 한

제11조 전무출신은 집무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하되 그 방로를 널리기 위하여 다음 1기 2기의 연한제를 둔다.

제12조 1기는 집무기간 만 7년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한다.  
단, 1기의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만 3년 이상을 충실 활동중 열반한 자는 수위단회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이를 1기로 인증할 수 있다.

제13조 2기는 집무기간만 14년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한다.  
단, 2기의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만 10년 이상을 충실 활동중 열반한 자는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이를 2기로 인증할 수 있다.

### 제 4장 절 차

#### 제 1절 지 원

제14조 전무출신을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본인의 지원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지부 교무나 기관장을 거쳐 총무부장에게 제출한다.

1. 전무출신 동기서 1통.
2. 전무출신 승락서 1통.
3. 관할 지방 교무나 기관장의 추천서 1통.
4. 자필 이력서 1통.
5. 명함판 사진 2매.
6. 호적 등본 1통.
7. 의사의 건강 진단서 1통.
8.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년 성적 증명서 각 1통.

- 제15조 관할지부 기관에서는 전무출신 지원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교무나 기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총무부장에게 제출한다.
- 제16조 총무부장은 전무출신 지원서를 심사한 후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의 인증으로써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7조 인증받은 지원자는 예비 전무출신으로하며 예비 전무출신부에 등록한다.
- 제18조 전무출신 지원에 대한 문례는 제 1호 서식과 같다.

### 제 2절 추 천

- 제19조 전무출신을 추천하는 자는 전무출신 지원인의 신성과 학력 및 신분등을 충분히 고찰한 후 행한다.
- 제20조 전무출신을 추천하는 자는 지원인의 장래에 대한 보증의 책임이 있다.
- 제21조 전무출신 추천에 대한 문례는 제 2호 서식과 같다.

### 제 3절 사가와의 관계

- 제22조 전무출신 지원인은 가족내 직접 관계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무출신 승락과 가정후사를 담당하겠다는 약속을 얻은 후 실행한다.
- 제23조 관계인의 전무출신 승락에 대한 문례는 제 3호 서식과 같다.

- 제24조 본교에서는 2기 이상의 전무출신 권장자를 거진출진부에 등록하고 해당 전무출신자의 성적에 따라 시상한다.
- 제25조 전무출신의 가족이 아닐지라도 전무출신 권장의 의지로 가사를 전담해 주는 자는 전조에 준한다.
- 제26조 전무출신으로서 가정사에 끌려 원직무에 태만 혹은 손실이 생길 때에는 그 직무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27조 전무출신은 특별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지방 교무로 임명될때에 수위단회의 인증을 얻어 가족을 대동하고 부임할 수 있다.  
단, 단일 세대에 한 한다.
  2. 가족을 대동하는 자는 관할 교도의 요구에 의하여 생활하고 별도로 다른 직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3. 대동 가족으로서 교화사업에 보조의 역할이 있을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보수 혹은 시상한다.
- 제28조 본교에서는 전무출신 후원회를 조직하여 자녀 교육과 기타 특별한 난경에 정신 혹은 물질로 수의 원조 할수 있다.
- 제29조 전무출신 권장인으로서 정토회를 조직하며 상호간의 친목과 공부사업의 장려 및 관계 전무출신자의 공헌에 협조케 한다.
- 제30조 전무출신 후원회 및 정토회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제31조 전무출신으로서 사가 생활에 혹 부득이한 형편이 있는때에는 수위단회의 인증을 얻어 전무출신을 휴역 혹은 중지할 수 있으되 재직중 다른 과오가 없고 또는 그 진퇴가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인의 소유 성적은 이전 인증하며 그 휴역 혹은 중지의 사유난에 주서로 “정식인증”이라 기입한다.
- 제32조 정식 인증을 얻어 전무출신을 휴역 혹은 중지한 자로서 가사를 정리하고 다시 집무할때에는 절차를 재요하지 아니하며 전 집무시 일을 계속하여 성적을 계산한다.

## 제 4절 서 원

- 제33조 전무출신 서원은 교직 3년 이상 복무한 예비 전무출신과 선원이나 원광대학 불교 교육과를 졸업한 자로서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전무출신 서원서를 총무부에 제출하고 법신불 전에 선서(출가)식을 행한다. 타 대학을 졸업한 자라도 종법사의 특인이 있을때에는 전무출신을 서원할 수 있다.
- 제34조 서원 선서를 필한자를 정식 전무출신이라 칭한다.
- 제35조 전무출신 서원에 대한 문제는 제 4호 서식과 같다.

## 제 5장 성 적

- 제36조 전무출신은 본교에 나타난 실공적으로써 성적의 등급을 정한다.
- 제37조 전무출신 성적은 당인의 자격과 연중 활동 여하를 사정하여 1, 2로부터 5까지의 5등급을 두고 상당한 연봉을 계산하여 당인의 용금을 제하고는 전부 성적에 편입한다.
- 제38조 용금 지불액이 소정한계를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금을 배액 계산하여 성적에서 삭제하되 삭제할 성적이 없을때에는 손실금으로 기재한다. 단. 시국 관계와 특별한 사정으로 수위단회의 인증이 있을때에는 배액 삭제를 하지 않는다.
- 제39조 전무출신으로서 교종 공비로 연한 수학을 할때에는 그 비용을 교종 부채로 하였다가 졸업후 집무시에 그 성적에서 보상한다.  
단, 공비로 수학한자가 졸업후 전무출신 실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학비를 반상하여야 한다.
- 제40조 전무출신으로서 요양시 사용한 교종 공비는 당인의 성적에서 제상한다. 단, 직접 집무는 아닐지라도 어느 방면으로든지 교종에 상당한 도움이 있는 자는 이를 제상하지 않는다.
- 제41조 전무출신 성적 사정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제 6장 대우 및 징벌

- 제42조 본교는 전무출신의 등록 등급에 따라 노쇠시에 봉양하며 상장을 부담하고 영모전에 봉안하여 영원히 조상으로 향례한다.
- 제43조 생자녀가 없는 전무출신에게 은자녀를 정하여 노쇠시 편의를 공여한다. 이 결의에 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제44조 교직에 14년이상 근무한 현역 전무출신자의 생은자녀중 1인에 한하여 교단내 교육기관에 입학을 지원 하였을때에는 그 학비를 면제한다.
- 제45조 전무출신으로서 연령 65세 이상이 되면 수양원에서 정양하게 한다. 단, 공사간 특별 사정이 있을때에는 이 연한에 구속되지 않는다.
- 제46조 수양원은 갑·을·병의 3종을 두고 그 성적에 따라 수용케 한다. 단, 시설이 완비되지 않을때에는 합동 수양할 수도 있다.
- 제47조 전무출신의 상장 및 복제는 성적에 따라 예전에 정한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48조 전무출신으로서 성적 5등 이상에 참예하여 영모전에 입묘할때에는 예전의 정한바에 의하여 입묘식을 행한다.
- 제49조 전무출신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된 범과가 있을 때에는 감찰위원회의 결의로 종법사님 인증을 얻어 견책 근신 정교 강계 탈계 제적의 처분을 받는다.
1. 사회에 드러난 죄악을 지은자.
  2. 본교의 중계를 범한자.
  3. 전무출신의 본원을 망각하고 빙공영사 하는자.
  4. 전무출신 규정을 무시하고 자행 자지 하는자.
  5. 기타 여러 방면으로 본교에 손상을 주는자.
- 제50조 전무출신 명부에서 제명된자로서 전과를 뉘우치고 본원에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3년 이상 회개한 증거를 대중앞에 나타내며 전자 범과로 인한 피해처를 보충한 후에 총무부장에게 복적원을 제출한다.
- 제51조 총무부장은 이를 감찰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의 인증으로서

다시 등록케 하되 전무출신 지원자와 동등 대우한다.

단, 대우 방법은 종법사의 특인으로서 혹 임시 사정할 수 있다.

## 제 7장 친 애

- 제52조 전무출신의 집단 공동 생활은 정신 일체와 육신 일체의 본지를 잘 이해하여 매사에 상호간 친애를 주로 한다.
- 제53조 동지간에 혹 정신상 과오가 있을 때에는 간격 없는 애정으로써 진실히 충고하며 동시에 그 과오가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주력한다.
- 제54조 충고를 받은자로서는 감사한 마음으로써 수납하여 즉시 회개 하기를 서약하고 절대로 불평 수치 의오의 심사를 두지 않기로 한다.  
단, 사실이 없는 일이면 온화한 어조로써 그 실정을 변명한다.
- 제55조 개인 충고가 3차에 미치되 회개하지 아니 하면 2인 내지 3인의 동지가 협력 충고하며 협력 충고가 3차에 미치되 또한 회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유를 감찰위원에 내고 한다.  
단, 긴급 사건과 또는 필요에 의하여는 개인 충고순을 다 밟지 아니하고 바로 감찰원에 연락할 수도 있다.
- 제56조 동지의 과오를 보고도 충고 또는 연락을 아니 한자 또는 과오를 중인에게 선전하는 자는 친애의 도에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 제57조 충고하는 동지에게 불평을 가지며 색원대질하고 충고하는 말을 무조건 무시 하는 자는 친애의 도에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 제58조 동지간에 지식 우열이 상대할 때에는 그 우한자가 열한자를 절대로 하지 하지 말고 힘미치는 대로 지식을 알려 주는 데에 노력하기로 한다.
- 제59조 어떠한 묘법이든지 단독적 견문이 있는 때에는 기회를 따라 모든 동지에게 전급하는 데에 노력 하기로 한다.
- 제60조 동지간에 혹 육체상 병고가 생할 때에는 가족의 정의에 의하여 힘미치는 대로 정성껏 원조 하기로 한다.

제61조 동지간에 애·경·재·상 등 일이 있을 때에는 힘미치는 대로 서로 동정 하기로 한다.

제62조 본 친애의 도를 지도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전무출신 수덕회를 둔다. 수덕회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부 칙.

제63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전무출신 규정 개정 (원기 57년 1월 11일 교규 제 28호)

### 제 1장 총 칙

- 제 1조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본교에 공헌한 자를 전무출신 이라 한다.
- 제 2조 전무출신의 의식 용금은 교종에서 수용하나 달리 급료 지불을 받지 아니 한다.
- 제 3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30개를 수지한다.
- 제 4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교직원외에는 다른 직무를 겸대하지 못한다.  
단, 본교 발전상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수위단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5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사업외에는 다른 사업을 병영하지 못한다.
- 제 6조 전무출신자의 활동중 소득은 전부 본교의 수입으로 한다.
- 제 7조 전무출신은 수위단회의 결의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 할 수 없다.

### 제 2장 자격

- 제 8조 전무출신은 다음의 각항으로써 그 자격을 인증한다.
1. 사가에 구속이 없이 그 임무를 전일 이행하는자.
  2. 임무의 취지가 급료에 있지 아니하고 의무감으로써 이행하는자.
  3. 본교의 명령에는 호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시 그 지정임무에 노력 하는자.
  4. 신성이 견실하여 본교외에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하는자.
  5. 공부 사업 양방면으로 항시 공덕이 드러 나는자.
  6. 기타 전무출신에 관한 모든 규정을 일일이 준수 하는자.

제 9조 전조에 해당된 자격도 다음의 각항에 해당 된자는 전무 출신을 지원할 수 없다.

1.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 없는자.
2. 전항의 학력이 없는자로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도 없는자.
3. 불치·폐질 및 전염병이 있는자.
4. 본교교리에 대하여 신근이 서지 못한자.
5. 세상에 드러난 악행이 있는자.
6. 연령 만 18세 미만된자와 60세 이상된자.

제10조 전조의 각항에 해당된자로서 종법사의 특인이 있을때에는 제 8조 각항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 제 3장 연 한

제11조 전무출신은 짐무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하되 그 방로를 널리기 위하여 다음 1기 2기의 연한제를 둔다.

제12조 1기는 짐무기간 만 7년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한다.

단, 1기의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만 3년 이상을 충실 활동중 열반한 자는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이를 1기로 인증할 수 있다.

제13조 2기는 짐무기간만 14년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한다.

단, 2기의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만 10년 이상을 충실 활동중 열반한 자는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이를 2기로 인증할 수 있다.

### 제 4장 절 차

#### 제 1절 지 원

- 제14조 전무출신을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본인의 지원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부 교무나 기관장을 거쳐 총무부장에게 제출한다.
1. 전무출신 동기서 1통.
  2. 전무출신 승락서 1통.
  3. 관할 지방 교무나 기관장의 추천서 1통.
  4. 자필 이력서 1통.
  5. 명함판 사진 2매.
  6. 호적 등본 1통.
  7. 의사의 건강 진단서 1통.
  8.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년 성적 증명서 각 1통.
- 제15조 관할지부 기관에서는 전무출신 지원 서류를 접수하면 그 지방의 예비심사(심사위원회)를 거쳐 교무나 기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총무부장에게 제출한다.
- 제16조 총무부장은 전무출신 지원서를 접수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7조 인증받은 지원자는 예비 전무출신으로하며 예비 전무 출신부에 등록한다.
- 제18조 전무출신 지원에 대한 문례는 제 1호 서식과 같다.

## 제 2절 추 천

- 제19조 전무출신을 추천하는 자는 전무출신 지원인의 신성과 학력 및 신분들을 충분히 고찰한 후 행한다.
- 제20조 전무출신을 추천하는 자는 지원인의 장래에 대한 보증의 책임이 있다.
- 제21조 전무출신 추천에 대한 문례는 제 2호 서식과 같다.

## 제 3절 사가와의 관계

- 제22조 전무출신 지원인은 가족내 직접 관계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무

- 출신 승락과 가정후사를 담당하겠다는 약속을 얻은 후 실행한다.
- 제23조 관계인의 전무출신 승락에 대한 문제는 제 3호 서식과 같다.
- 제24조 본교에서는 2기 이상의 전무출신 권장자를 거진 출진부에 등록하고 해당 전무출신자의 성적에 따라 시상한다.
- 제25조 전무출신의 가족이 아닐지라도 전무 출신 권장의 의지로 가사를 전담해주는 자는 전조에 준한다.
- 제26조 전무출신으로서 가정사에 끌려 원직무에 태만 혹은 손실이 생길 때에는 그 직무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27조 전무출신은 특별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지방 교무로 임명될때에 수위단회의 인증을 얻어 가족을 대동하고 부임할 수 있다.  
단. 단일 세대에 한 한다.
  2. 가족을 대동하는 자는 관할 교도의 요구에 의하여 생활하고 별도로 다른 직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3. 대동 가족으로서 교화사업에 보조의 역할이 있을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보수 혹은 시상한다.
- 제28조 본교에서는 전무출신 후원회를 조직하여 자녀 교육과 기타 특별한 난경에 정신 혹은 물질로 수의 원조 할수 있다.
- 제29조 전무출신 권장인으로서 정토회를 조직하며 상호간의 친목과 공부 사업의 장려 및 관계 전무출신자의 공헌에 협조케 한다.
- 제30조 전무출신 후원회 및 정토회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제31조 전무출신으로서 사가 생활에 혹 부득이한 형편이 있는때에는 수위 단회의 인증을 얻어 전무출신을 휴역 혹은 중지할 수 있으되 재직중 다른 과오가 없고 또는 그 진퇴가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인의 소유 성적은 이전 인증하며 그 휴역 혹은 중지의 사유난에 주서로 “정식인증”이라 기입한다.
- 제32조 정식 인증을 얻어 전무출신을 휴역 혹은 중지한 자로서 가사를 정리하고 다시 집무할때에는 절차를 재오하지 아니하며 전 집무시

일을 계속하여 성적을 계산한다.

#### 제 4절 서 원

- 제33조 전무출신 서원은 교직 3년 이상 복무한 예비 전무출신과 선원이나 원광대학 원불교학과를 졸업한 자와 타대학 졸업자라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는 전무출신 서원서를 총무부에 제출하고 수위단회의 인증을 얻어 법신불전에 선서(출가)식을 행한다.
- 제34조 서원 선서를 필한자를 정식 전무출신이라 칭한다.
- 제35조 전무출신 서원에 대한 문례는 제 4호 서식과 같다.

#### 제 5장 성 적

- 제36조 전무출신은 본교에 나타난 실공적으로써 성적의 등급을 정한다.
- 제37조 전무출신 성적은 당인의 자격과 연중 활동 여하를 사정하여 1, 2로부터 5까지의 5등급을 두고 상당한 연봉을 계산하여 당인의 용금을 제하고는 전부 성적에 편입한다.
- 제38조 용금 지불액이 소정한계를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금을 배액 계산하여 성적에서 삭제하되 삭제할 성적이 없을때에는 손실금으로 기재한다. 단. 시국 관계와 특별한 사정으로 수위단회의 인증이 있을때에는 배액 삭제를 하지 않는다.
- 제39조 전무출신으로서 교증 공비로 연한 수학을 할때에는 그 비용을 교증 부채로 하였다가 졸업후 집무시에 그 성적에서 보상한다.  
단, 공비로 수학한자가 졸업후 전무출신 실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학비를 반상하여야 한다.
- 제40조 전무출신으로서 요양시 사용한 교증 공비는 당인의 성적에서 제상한다. 단 직접 집무는 아닐지라도 어느 방면으로든지 교증에 상당한 도움이 있는 자는 이를 제상하지 않는다.
- 제41조 전무출신 성적 사정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제 6장 대우 및 징벌

- 제42조 본교는 전무출신의 등록 등급에 따라 노쇠시에 봉양하며 상장을 부담하고 영모전에 봉안하여 영원히 조상으로 향례한다.
- 제43조 생자녀가 없는 전무출신에게 은자녀를 정하여 노쇠시 편의를 공여 한다. 이 결의에 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제44조 교직에 14년이상 근무한 현역 전무출신자의 생은자녀중 1인에 한하여 교단내 교육기관에 입학을 지원 하였을때에는 그 학비를 면제한다.
- 제45조 전무출신으로서 연령 65세 이상이 되면 수양원에서 정양하게 한다.  
단, 공사간 특별 사정이 있을때에는 이 연한에 구속되지 않는다.
- 제46조 수양원은 갑·을·병의 3종을 두고 그 성적에 따라 수용케 한다.  
단, 시설이 완비되지 않을때에는 합동 수양할 수도 있다.
- 제47조 전무출신의 상장 및 복제는 성적에 따라 예전에 정한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48조 전무출신으로서 성적 5등 이상에 참예하여 영모전에 입묘할때에는 예전의 정한바에 의하여 일묘식을 행한다.
- 제49조 전무출신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된 범과가 있을 때에는 감찰위원회의 결의로 종법사님 인증을 얻어 견책 근신 정교 강계 탈계 제적의 처분을 받는다.
1. 사회에 드러난 죄악을 지은자.
  2. 본교의 중계를 범한자.
  3. 전무출신의 본원을 망각하고 빙공영사 하는자.
  4. 전무출신 규정을 무시하고 자행 자지 하는자.
  5. 기타 여러 방면으로 본교에 손상을 주는자.
- 제50조 전무출신 명부에서 제명된자로서 전과를 뉘우치고 본원에 회복하

고져 하는 자는 3년 이상 회개한 증거를 대중앞에 나타내며 전자 범과로 인한 피해처를 보충한후에 총무부장에게 복적원을 제출한다.

- 제51조 총무부장은 이를 감찰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의 인증으로서 다시 등록케 하되 전무출신 지원자와 동등 대우한다.  
단, 대우 방법은 종법사의 특인으로서 혹 임시 사정할 수 있다.

## 제 7장 친 애

제52조 전무출신의 집단 공동 생활은 정신 일체와 육신 일체의 본지를 잘 이해하여 매사에 상호간 친애를 주로 한다.

제53조 동지간에 혹 정신상 과오가 있을 때에는 간격 없는 애정으로써 진실히 충고하며 동시에 그 과오가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주력한다.

제54조 충고를 받은자로서는 감사한 마음으로써 수납하여 즉시 회개 하기 를 서약하고 절대로 불평 수치 의오의 심사를 두지 않기로 한다.  
단, 사실이 없는 일이면 은화한 어조로써 그 실정을 변명한다.

제55조 개인 충고가 3차에 미치되 회개하지 아니 하면 2인 내지 3인의 동지가 협력 충고하며 협력 충고가 3차에 미치되 또한 회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유를 감찰위원에 내고 한다.

단, 긴급 사건과 또는 필요에 의하여는 개인 충고순을 다 밟지 아니 하고 바로 감찰원에 연락할 수도 있다.

제56조 동지의 과오를 보고도 충고 또는 연락을 아니 한자 또는 과오를 중인에게 선전하는 자는 친애의 도에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제57조 충고하는 동지에게 불평을 가지며 색원대칠하고 충고하는 말을 무 조건 무시 하는 자는 친애의 도에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제58조 동지간에 지식 우열이 상대할 때에는 그 우한자가 열한자를 절대로 하시 하지 말고 힘미치는 대로 지식을 알려 주는 데에 노력하

기로 한다.

- 제59조 어떠한 묘법이든지 단독적 견문이 있는 때에는 기회를 따라 모든 동지에게 전급하는 데에 노력 하기로 한다.
- 제60조 동지간에 혹 육체상 병고가 생할 때에는 가족에 의하여 힘미치는 대로 정성껏 원조 하기로 한다.
- 제61조 동지간에 애·경·재·상 등 일이 있을 때에는 힘미치는 대로 서로 동정하기로 한다.
- 제62조 본 친애의 도를 지도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전무출신 수덕회를 둔다. 수덕회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부 칙

- 제63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3. 전무출신 규정 개정 ( 68. 2. 22 교규 제 62호)**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본교에 공헌한 자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 제 2조 전무출신의 의식 용금은 교종에서 수용하나 달리 급료 지불을 받지 아니 한다.
- 제 3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30개를 수지한다.
- 제 4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교직원외에는 다른 직무를 겸대하지 못한다. 단, 본교 발전상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수위단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5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사업외에는 다른 사업을 병영하지 못한다.
- 제 6조 전무출신자의 활동중 소득은 전부 본교의 수입으로 한다.
- 제 7조 전무출신은 수위단회 결의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 **제 2 장 직종 및 자격**

- 제 8조 전무출신에 교화직, 교육직, 행정직, 봉공직의 직종을 두어 본인의 능력과 직장에 따라 교단에 공헌하도록 한다. 직종으로서 전무출신의 자격과 대우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1. 기능직은 각종 기능자격자로서 해당기능직에 전문하는 자를 말한다.
  2. 봉공직은 중앙총부, 각급기관, 교당의 일반노무직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3. 행정직은 중앙총부 및 각급기관의 관리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4. 교육직은 각종 전문적인 교육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5. 교화직은 각종 전문적인 교화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 9조 전무출신은 다음의 각항으로써 그 자격을 인증한다.

1. 사가에 구속이 없이 그 임무를 전일 이행하는자.

2. 임무의 취지가 급료에 있지 아니하고 의무감으로써 이행하는자.

3. 본교의 명령에는 호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지정임무에 노력 하는자.

4. 신성이 견실하여 본교외에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하는자.

5. 공부 사업 양방면으로 항상 공덕이 드러 나는자.

6. 기타 전무출신에 관한 모든 규정을 일일이 준수 하는자.

제10조 전조에 해당된자라도 다음의 각항에 해당된자는 전무출신을 지원할 수 없다.

1. 교화, 교육, 행정직은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이 없는자.

2. 전항의 학력이 없는자로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도 없는자.

3. 불구 폐질 및 전염병이 있는자.

4. 본교교리에 대하여 신근이 서지 못한자.

5. 세상에 드러난 악행이 있는자.

6. 연령 만 18세 미만된자와 60세 이상된자.

제11조 전조의 각항에 해당된자로서 종법사의 특인이 있을때에는 제 8조 각 항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 제 3 장 연 한

제12조 전무출신은 집무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하되 그 방로를 널리기 위하여 다음 1기 2기의 연한제를 둔다.

제13조 1기는 집무기간 만 7년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한다.

단, 1기의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만 3년 이상을 충실히 활동중 열반한 자는 수위단회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이를 1기로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 2기는 집무기간만 14년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한다.

단, 2기의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만 10년 이상을 충실 활동중 열반한 자는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이를 2기로 인증할 수 있다.

## 제 4 장 절 차

### 제 1 절 지 원

제15조 전무출신을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본인의 지원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교당 교무나 기관장을 거쳐 총무부장에게 제출한다.

1. 호적 등본 1통.
2. 명함판 사진 2매.
3. 의사의 건강 진단서 1통.
4.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1통.

제16조 관할 교당, 기관에서는 전무출신 지원 서류를 접수하면 그 지방의 예비심사(심사위원회)를 거쳐 교무나 기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총무부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 총무부장은 전무출신 지원서를 접수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 인증받은 지원자는 예비 전무출신으로하며 예비 전무 출신부에 등록한다.

제19조 전무출신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제 1호 서식과 같다.

### 제 2 절 추 천

제20조 전무출신을 추천하는 자는 전무출신 지원인의 신성과 학력 및 신분들을 충분히 고찰한 후 행한다.

제21조 전무출신을 추천하는 자는 지원인의 장래에 대한 보증의 책임이 있다.

### 제 3 절 사가와의 관계

- 제22조 전무출신 지원인은 가족내 직접 관계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무출신 승락과 가정후사를 담당하겠다는 약속을 얻은 후 실행한다.
- 제23조 본교에서는 2기 이상의 전무출신 권장자를 거친 출진부에 등록하고 해당 전무출신자의 성적에 따라 시상한다.
- 제24조 전무출신의 가족이 아닐지라도 전무 출신 권장의 의지로 가사를 전담 해주는 자는 전조에 준한다.
- 제25조 전무출신으로서 가정사에 끌려 원직무에 태만 혹은 손실이 생길 때에는 그 직무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26조 전무출신은 특별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지방 교무로 임명될때에 수위단회의 인증을 얻어 가족을 대동하고 부임할 수 있다.
    - 단. 단일 세대에 한 한다.
  2. 가족을 대동하는 자는 관할 교도의 요구에 의하여 생활하고 별도로 다른 직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3. 대동 가족으로서 교화사업에 보조의 역할이 있을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보수 혹은 시상한다.
- 제27조 본교에서는 전무출신 후원회를 조직하여 자녀 교육과 기타 특별한 난경에 정신 혹은 물질로 수의 원조 할수 있다.
- 제28조 전무출신 권장인으로서 정토회를 조직하며 상호간의 친목과 공부사업의 장려 및 관계 전무출신자의 공헌에 협조케 한다.
- 제29조 전무출신 후원회 및 정토회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제30조 전무출신으로서 사가 생활에 혹 부득이한 형편이 있는때에는 수위단회의 인증을 얻어 전무출신을 휴역 혹은 중지할 수 있으되 재직중 다른 과오가 없고 또는 그 진퇴가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인의 소유 성적은 이전 인증하며 그 휴역 혹은 중지의 사유난에 주서로 “정식인증”이라 기입한다.
- 제31조 정식 인증을 얻어 전무출신을 휴역 혹은 중지한 자로서 가사를 정리

하고 다시 집무할때에는 절차를 재오하지 아니하며 전 집무시 일을 계속하여 성적을 계산한다.

#### 제 4 절 서 원

- 제32조 전무출신 서원은 교직 3년 이상 복무한 예비 전무출신과 선원이나 원광대학 원불교학과를 졸업한 자와 타대학 졸업자라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는 전무출신 서원서를 총무부에 제출하고 수위단회의 인증을 얻어 법신불전에 선서(출가)식을 행한다.
- 제33조 서원 선서를 필한자를 정식 전무출신이라 칭한다.

#### 제 5 장 성 적

- 제34조 전무출신은 본교에 나타난 실공적으로써 성적의 등급을 정한다.
- 제35조 전무출신 성적은 당인의 자격과 연중 활동 여하를 사정하여 1, 2로부터 5까지의 5등급을 두고 상당한 연봉을 계산하여 당인의 용금을 제하고는 전부 성적에 편입한다.
- 제36조 용금 지불액이 소정한계를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금을 배액 계산하여 성적에서 삭제하되 삭제할 성적이 없을때에는 손실금으로 기재한다.  
단. 시국 관계와 특별한 사정으로 수위단회의 인증이 있을때에는 배액 삭제를 하지 않는다.
- 제37조 전무출신으로서 교종 공비로 연한 수학을 할때에는 그 비용을 교종 부채로 하였다가 졸업후 집무시에 그 성적에서 보상한다.  
단, 공비로 수학한자가 졸업후 전무출신 실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학비를 반상하여야 한다.
- 제38조 전무출신으로서 요양시 사용한 교종 공비는 당인의 성적에서 제상한다. 단 직접 집무는 아닐지라도 어느 방면으로든지 교종에 상당한 도움이 있는 자는 이를 제상하지 않는다.
- 제39조 전무출신 성적 사정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제 6 장 대우 및 정벌

- 제40조 본교는 전무출신의 등록 등급에 따라 노쇠시에 봉양하며 상장을 부담하고 영모전에 봉안하여 영원히 조상으로 향례한다.
- 제41조 생자녀가 없는 전무출신에게 온자녀를 정하여 노쇠시 편의를 공여한다. 이 결의에 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제42조 교직에 14년이상 근무한 현역 전무출신자의 생은자녀중 1인에 한하여 교단내 교육기관에 입학을 지원 하였을때에는 그 학비를 면제한다.
- 제43조 전무출신으로서 연령 65세 이상이 되면 수양원에서 정양하게 한다.  
단, 공사간 특별 사정이 있을때에는 이 연한에 구속되지 않는다.
- 제44조 수양원은 갑·을·병의 3종을 두고 그 성적에 따라 수용케 한다.  
단, 시설이 완비되지 않을때에는 합동 수양할 수도 있다.
- 제45조 전무출신의 상장 및 복제는 성적에 따라 예전에 정한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46조 전무출신으로서 성적 5등 이상에 참예하여 영모전에 입묘할때에는 예전의 정한바에 의하여 일묘식을 행한다.
- 제47조 전무출신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된 범과가 있을 때에는 감찰위원회의 결의로 종법사님 인증을 얻어 견책 근신 정교 강계 탈계 제적의 처분을 받는다.
1. 사회에 드러난 죄악을 지은자.
  2. 본교의 중계를 범한자.
  3. 전무출신의 본원을 망각하고 빙공영사 하는자.
  4. 전무출신 규정을 무시하고 자행 자지 하는자.
  5. 기타 여러 방면으로 본교에 손상을 주는자.
- 제48조 전무출신 명부에서 제명된자로서 전과를 뉘우치고 본원에 회복하고려하는 자는 3년 이상 회개한 증거를 대중앞에 나타내며 전자 범과로 인한 피해처를 보충한후에 총무부장에게 복적원을 제출한다.

제49조 총무부장은 이를 감찰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의 인증으로서 다시 등록케 하되 전무출신 지원자와 동등 대우한다.  
단, 대우 방법은 종법사의 특인으로서 혹 임시 사정할 수 있다.

## 제 7 장 친 애

- 제50조 전무출신의 집단 공동 생활은 정신 일체와 육신 일체의 본지를 잘 이해하여 매사에 상호간 친애를 주로 한다.
- 제51조 동지간에 혹 정신상 과오가 있을 때에는 간격 없는 애정으로써 진실히 충고하며 동시에 그 과오가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주력한다.
- 제52조 충고를 받은자로서는 감사한 마음으로써 수납하여 즉시 회개 하기를 서약하고 절대로 불평 수치 의오의 심사를 두지 않기로 한다.  
단, 사실이 없는 일이면 온화한 어조로써 그 실정을 변명한다.
- 제53조 개인 충고가 3차에 미치되 회개하지 아니 하면 2인 내지 3인의 동지가 협력 충고하며 협력 충고가 3차에 미치되 또한 회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유를 감찰위원에 내고 한다.  
단, 긴급 사건과 또는 필요에 의하여는 개인 충고순을 다 밟지 아니하고 바로 감찰원에 연락할 수도 있다.
- 제54조 동지의 과오를 보고도 충고 또는 연락을 아니 한자 또는 과오를 증인에게 선전하는 자는 친애의 도에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 제55조 충고하는 동지에게 불평을 가지며 색원대칠하고 충고하는 말을 무조건 무시 하는 자는 친애의 도에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 제56조 동지간에 지식 우열이 상대할 때에는 그 우한자가 열한자를 절대로 하시 하지 말고 힘미치는 대로 지식을 알려 주는 데에 노력하기로 한다.
- 제57조 어떠한 모법이든지 단독적 견문이 있는 때에는 기회를 따라 모든 동지에게 전급하는 데에 노력 하기로 한다.
- 제58조 동지간에 혹 육체상 병고가 생할 때에는 가족에 의하여 힘미치는 대

로 정성껏 원조 하기로 한다.

제59조 동지간에 애·경·재·상 등 일이 있을 때에는 힘미치는 대로 서로 동정 하기로 한다.

제60조 본 친애의 도를 지도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전무출신 수덕회를 둔다. 수덕회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부 칙

제61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전무출신 규정 개정 ( 70. 9. 20 교규 제 70호)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본교에 공헌한 자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 제 2조 전무출신의 의식 용금은 교종에서 수용하나 달리 급료 지불을 받지 아니 한다.
- 제 3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30개를 수지한다.
- 제 4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교직원외에는 다른 직무를 겸대하지 못한다. 단, 본교 발전상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수위단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5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사업외에는 다른 사업을 병영하지 못한다.
- 제 6조 전무출신자의 활동중 소득은 전부 본교의 수입으로 한다.
- 제 7조 전무출신은 수위단회 결의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 제 2 장 직종 및 자격

- 제 8조 전무출신에 교화직, 교육직, 행정직, 봉공직의 직종을 두어 본인의 능력과 직장에 따라 교단에 공헌하도록 한다. 직종으로써 전무출신의 자격과 대우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1. 기능직은 각종 기능자격자로써 해당기능직에 전문하는 자를 말한다.
  2. 봉공직은 중앙총부, 각급기관, 교당의 일반노무직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3. 행정직은 중앙총부 및 각급기관의 관리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4. 교육직은 각종 전문적인 교육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5. 교화직은 각종 전문적인 교화에 전무하는 자를 말한다.

- 제 9조 전무출신은 다음의 각항으로써 그 자격을 인증한다.
1. 사가에 구속이 없이 그 임무를 전일 이행하는자.
  2. 임무의 취지가 급료에 있지 아니하고 의무감으로써 이행하는자.
  3. 본교의 명령에는 호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시 그 지정임무에 노력하는 자.
  4. 신성이 견실하여 본교외에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하는자.
  5. 공부 사업 양방면으로 항시 공덕이 드러 나는자.
  6. 기타 전무출신에 관한 모든 규정을 일일이 준수 하는자.

- 제10조 전조에 해당된자라도 다음의 각항에 해당된자는 전무출신을 지원할 수 없다.
1. 교화, 교육, 행정직은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이 없는자.
  2. 전항의 학력이 없는자로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도 없는자.
  3. 불구 폐질 및 전염병이 있는자.
  4. 본교교리에 대하여 신근이 서지 못한자.
  5. 세상에 드러난 악행이 있는자.
  6. 연령 만 18세 미만된자와 55세 이상된자.

- 제11조 전조의 각항에 해당된자로서 종법사의 특인이 있을때에는 제 8조 각 항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 제 3 장 연 한

- 제12조 전무출신은 징무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하되 그 방로를 널리기 위하여 다음 1기 2기의 연한제를 둔다.

- 제13조 1기는 징무기간 만 7년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한다.  
단, 1기의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만 3년 이상을 충실히 활동중 열반한

자는 수위단회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이를 1기로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 2기는 집무기간만 14년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한다.

단, 2기의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만 10년 이상을 충실 활동중 열반한  
자는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이를 2기로 인증할 수 있다.

#### 제 4 장 절 차

##### 제 1 절 지 원

제15조 전무출신을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본인의 지원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교당 교무나 기관장을 거쳐 총무부장에게 제출한다.

1. 호적 등본 1통.
2. 명함판 사진 2매.
3. 의사의 건강 진단서 1통.
4.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1통.

제16조 관할 교당, 기관에서는 전무출신 지원 서류를 접수하면 그 지방의 예  
비심사(심사위원회)를 거쳐 교무나 기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총무  
부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 총무부장은 전무출신 지원서를 접수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 인증받은 지원자는 예비 전무출신으로하며 예비 전무 출신부에 등록  
한다.

제19조 전무출신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제 1호 서식과 같다.

##### 제 2 절 추 천

제20조 전무출신을 추천하는 자는 전무출신 지원인의 신성과 학력 및 신분들  
을 충분히 고찰한 후 행한다.

제21조 전무출신을 추천하는 자는 지원인의 장래에 대한 보증의 책임이 있  
다.

### 제 3 절 사가와의 관계

- 제22조 전무출신 지원인은 가족내 직접 관계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무출신 승락과 가정후사를 담당하겠다는 약속을 얻은 후 실행한다.
- 제23조 본교에서는 2기 이상의 전무출신 권장자를 거진 출진부에 등록하고 해당 전무출신자의 성적에 따라 시상한다.
- 제24조 전무출신의 가족이 아닐지라도 전무 출신 권장의 의지로 가사를 전담 해주는 자는 전조에 준한다.
- 제25조 전무출신으로서 가정사에 끌려 원직무에 태만 혹은 손실이 생길 때에는 그 직무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26조 전무출신은 특별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지방 교무로 임명될때에 수위단회의 인증을 얻어 가족을 대동하고 부임할 수 있다.  
단, 단일 세대에 한 한다.
  2. 가족을 대동하는 자는 관할 교도의 요구에 의하여 생활하고 별도로 다른 직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3. 대동 가족으로서 교화사업에 보조의 역할이 있을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보수 혹은 시상한다.
- 제27조 본교에서는 전무출신 후원회를 조직하여 자녀 교육과 기타 특별한 난경에 정신 혹은 물질로 수의 원조 할수 있다.
- 제28조 전무출신 권장인으로서 정토회를 조직하며 상호간의 친목과 공부사업의 장려 및 관계 전무출신자의 공헌에 협조케 한다.
- 제29조 전무출신 후원회 및 정토회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제30조 전무출신으로서 사가 생활에 혹 부득이한 형편이 있는때에는 수위단회의 인증을 얻어 전무출신을 휴역 혹은 중지할 수 있으되 재직중 다른 과오가 없고 또는 그 진퇴가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인의 소유 성적은 이전 인증하며 그 휴역 혹은 중지의 사유난에 주서로 “정식인증”이라 기입한다.

제31조 정식 인증을 얻어 전무출신을 휴역 혹은 중지한 자로서 가사를 정리하고 다시 집무할때에는 절차를 재오하지 아니하며 전 집무시 일을 계속하여 성적을 계산한다.

#### 제 4 절 서 원

제32조 전무출신 서원은 교직 4년 이상 복무한 예비 전무출신과 선원이나 원광대학 원불교학과를 졸업한 자와 타대학 졸업자라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는 전무출신 서원서를 총무부에 제출하고 수위단회의 인증을 얻어 법신불전에 선서(출가)식을 행한다.  
단, 예비 전무출신으로서 수학 또는 근무중 열반한 자는 수위단회의 인증을 얻어 정식 전무출신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33조 서원 선서를 필한자를 정식 전무출신이라 칭한다.

#### 제 5 장 성 적

제34조 전무출신은 본교에 나타난 실공적으로써 성적의 등급을 정한다.

제35조 전무출신 성적은 당인의 자격과 연중 활동 여하를 사정하여 1, 2로부터 5까지의 5등급을 두고 상당한 연봉을 계산하여 당인의 용금을 제하고는 전부 성적에 편입한다.

제36조 용금 지불액이 소정한계를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금을 배액 계산하여 성적에서 삭제하되 삭제할 성적이 없을때에는 손실금으로 기재한다.  
단. 시국 관계와 특별한 사정으로 수위단회의 인증이 있을때에는 배액 삭제를 하지 않는다.

제37조 전무출신으로서 교증 공비로 연한 수학을 할때에는 그 비용을 교증 부채로 하였다가 졸업후 집무시에 그 성적에서 보상한다.  
단, 공비로 수학한자가 졸업후 전무출신 실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학비를 반상하여야 한다.

제38조 전무출신으로서 요양시 사용한 교증 공비는 당인의 성적에서 제상한

다. 단 직접 짐무는 아닐지라도 어느 방면으로든지 교종에 상당한 도움이 있는 자는 이를 제상하지 않는다.

제39조 전무출신 성적 사정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제 6 장 대우 및 징벌

제40조 본교는 전무출신의 등록 등급에 따라 노쇠시에 봉양하며 상장을 부담하고 영모전에 봉안하여 영원히 조상으로 향례한다.

제41조 생자녀가 없는 전무출신에게 은자녀를 정하여 노쇠시 편의를 공여한다. 이 결의에 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제42조 교직에 14년이상 근무한 현역 전무출신자의 생은자녀중 1인에 한하여 교단내 교육기관에 입학을 지원 하였을때에는 그 학비를 면제한다.

제43조 전무출신으로서 연령 65세 이상이 되면 수양원에서 정양하게 한다. 단, 공사간 특별 사정이 있을때에는 이 연한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44조 수양원은 갑·을·병의 3종을 두고 그 성적에 따라 수용케 한다. 단, 시설이 완비되지 않을때에는 합동 수양할 수도 있다.

제45조 전무출신의 상장 및 복제는 성적에 따라 예전에 정한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6조 전무출신으로서 성적 5등 이상에 참예하여 영모전에 입묘할때에는 예전의 정한바에 의하여 일묘식을 행한다.

제47조 전무출신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된 범과가 있을 때에는 감찰위원회의 의결로 종법사님 인증을 얻어 견책 근신 정교 강계 탈계 제적의 처분을 받는다.

1. 사회에 드러난 죄악을 지은자.
2. 본교의 중계를 범한자.
3. 전무출신의 본원을 망각하고 빙공영사 하는자.
4. 전무출신 규정을 무시하고 자행 자지 하는자.
5. 기타 여러 방면으로 본교에 손상을 주는자.

- 제48조 전무출신 명부에서 제명된자로서 전과를 뉘우치고 본원에 회복하고려 하는 자는 3년 이상 회개한 증거를 대중앞에 나타내며 전자 범과로 인한 피해처를 보충한후에 총무부장에게 복적원을 제출한다.
- 제49조 총무부장은 이를 감찰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의 인증으로서 다시 등록케 하되 전무출신 지원자와 동등 대우한다.  
단, 대우 방법은 종법사의 특인으로서 혹 임시 사정할 수 있다.

## 제 7 장 친 애

- 제50조 전무출신의 집단 공동 생활은 정신 일체와 육신 일체의 본지를 잘 이해하여 매사에 상호간 친애를 주로 한다.
- 제51조 동지간에 혹 정신상 과오가 있을 때에는 간격 없는 애정으로써 진실히 충고하며 동시에 그 과오가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주력한다.
- 제52조 충고를 받은자로서는 감사한 마음으로써 수납하여 즉시 회개 하기를 서약하고 절대로 불평 수치 의오의 심사를 두지 않기로 한다.  
단, 사실이 없는 일이면 은화한 어조로써 그 실정을 변명한다.
- 제53조 개인 충고가 3차에 미치되 회개하지 아니 하면 2인 내지 3인의 동지가 협력 충고하며 협력 충고가 3차에 미치되 또한 회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유를 감찰위원에 내고 한다.  
단, 긴급 사건과 또는 필요에 의하여는 개인 충고순을 다 밟지 아니하고 바로 감찰원에 연락할 수도 있다.
- 제54조 동지의 과오를 보고도 충고 또는 연락을 아니 한자 또는 과오를 중인에게 선전하는 자는 친애의 도에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 제55조 충고하는 동지에게 불평을 가지며 색원대칠하고 충고하는 말을 무조건 무시 하는 자는 친애의 도에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 제56조 동지간에 지식 우열이 상대할 때에는 그 우한자가 열한자를 절대로 하시 하지 말고 힘미치는 대로 지식을 알려 주는 데에 노력하기로 한다.

- 제57조 어떠한 모범이든지 단독적 견문이 있는 때에는 기회를 따라 모든 동지에게 전급하는 데에 노력 하기로 한다.
- 제58조 동지간에 혹 육체상 병고가 생할 때에는 가족에 의하여 힘미치는 대로 정성껏 원조 하기로 한다.
- 제59조 동지간에 애·경·재·상 등 일이 있을 때에는 힘미치는 대로 서로 동정 하기로 한다.
- 제60조 본 친애의 도를 지도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전무출신 수덕회를 둔다. 수덕회에 관한 규정은 별로 정한다.

#### 부 칙

- 제61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5. 전무출신 규정 개정 ( 77. 2. 12 교규 제 95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헌 제18조에 의거하여 전무출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무출신이란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신) 전무출신의 정신은 다음과 같다.

1. 시방세계 육도사생의 전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요, 전체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으로 안다.
2. 교단과 인류와 생령을 위하여 남김없이 심신을 바친다.
3. 삼할팔조와 사온사요를 몸소 실천하여 전인류에게 전하여 줄 천직을 부여받았다.
4. 진리와 법과 공을 위하여는 신命을 다한다.
5. 오직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과 자비심으로 충만된 삶으로 산다.

제4조(자세) 전무출신은 다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신성이 견실하여 진리와 법과 스승 이외에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 한다.
2. 사가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그 임무에 전일한다.
3. 임무의 취지가 급료 여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감으로써 이행한다.
4. 교단의 명령에는 호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지정업무에 충실히 한다.
5. 공부, 사업 양 방면으로 항상 공덕을 나룬다.
6. 기타 전무출신에 관한 규정을 일일이 준수한다.

제5조(솔성요론과 계문준수) 전무출신은 솔성요론과 계문을 반드시 지킨다.

제6조(품과) ①전무출신 제도에 다음과 같은 품과를 두어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교단에 공헌하게 한다.

1.교무:교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화를 비롯한 교단의 모든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2.도무:도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행정·자선·연구·기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3.덕무:덕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와 기능 등의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②전무출신의 품과별 자격 검정에 관하여는 교규로 정한다.

제7조(구별) ①전무출신은 교단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별을 두어 문호를 열어갈 수 있다.

1.용금을 받는 자.

2.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3.급료를 받는 자.

②전항 호별 전환 및 시행에 관하여는 교령으로 전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전무출신은 전무출신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화 및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하여는 훈련규정에 따른다.

## 제 2 장 자 격 취 득

### 제 1절 지 원

제9조(지원자격) ①전무출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본교의 신앙에 대하여 신근이 확실한 자

2.심신이 건강한 자

3.세상에 드러난 악행이 없는 자

4.교령이 정한 품과별 지원 연령에 해당된 자

②종법사의 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구비서류) 전무출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소속 교당의 교무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1.전무출신 지원서
- 2.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3.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4.건강진단서
- 5.기타 지정 서류

## 제 2 절 심 사

제11조(예비심사) 소속교당·기관에서는 전무출신 지원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교당심사와 교구심사를 거쳐서 교무나 기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정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추천·보증) ①전무출신 지원자를 추천 또는 보증할 때에는 전무출신 지원자의 신성 및 신분 등을 일년 이상 충분히 고찰한 후에 한다.  
②전무출신 추천인과 보증인은 지원인의 장래에 대한 보증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중앙심사) ①전무출신 지원서류가 접수되면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지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중앙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자와 의논하여 품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심사에 관하여는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규칙에 따른다.

제14조(등록) ①중앙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지원자는 예비전무출신 지원자격을 갖는다.  
②예비전무출신 지원자격을 가진 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검정에 합격하거나 또는 합격하여 의무복무를 시작함으로써 예비전무출신 명부에 등록된다.

## 제 3 절 교육 및 서원

제15조(교육) 예비전무출신은 교육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의무

복무를 이수해야 한다.

제16조(승인) 예비전무출신으로서 정한 바 교육·훈련과정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자는 전무출신서원서를 종법사에게 제출하여 수위단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서원의식) 전무출신 서원을 승인 받은 자는 법신불 사은전에 서원의식을 거행한다.

### 제 3 장 복무 및 생활

제18조(근무처) 전무출신은 교단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단의 발전상 필요한 때에는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은 후 종법사의 명에 따라 교단 이외의 기관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19조(인사) 전무출신의 인사는 교헌에 규정된 이외에는 인사임면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휴역) 전무출신은 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 휴역을 할 수 있다.

제21조(자퇴) 전무출신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퇴할 수 있다.

다만 자퇴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소멸되지는 아니한다.

제22조(정년퇴임) 정년은 68세로 한다.

다만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원에 따라 소정의 심의를 거쳐 정년 퇴임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복제) ①전무출신은 의식집행과 평소 생활에 있어서 소정의 복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복제에 관하여는 교규로 정한다.

제24조(생활의무) ①전무출신은 정신일체와 생활일체를 위하여 당해 기관·교당에서 공동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 사가 생활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전무출신은 도량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전무출신은 생활과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직자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④ 공동생활에 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금지 및 제한) ① 전무출신은 교단의 직무 이외에 다른 사업을 병영하지 못한다.

② 전무출신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전무출신은 상급자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④ 전무출신은 교단의 교직 이외에는 다른 직무를 겸대하지 못한다.

다만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직무로써 교화상 필요할 때에는 교정원장 또는 교구장에게 신고한 후 겸대할 수 있다.

⑤ 전무출신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교화상 필요에 따라 교단의 방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비정치적·비영리적 단체의 경우 교정원장 또는 교구장에게 신고한 후 조직 또는 가입할 수 있다.

⑥ 단체조직은 단체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친애의 도) 전무출신은 다음의 친애의 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1. 전무출신 상호간에는 지중한 윤기와 정리로써 선은 서로 권장하고 격려하며 악은 서로 경계하고 깨우쳐 준다.

2. 동지간에 혹 과오가 있을 때에는 간격 없는 애정으로써 친절히 충고하며 동시에 그 과오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3. 충고를 받은 자로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참회개과하기로 다짐하고 절대로 불평·수치·혐오의 마음을 두지 않기로 한다.

다만 사실이 없는 일이면 은화한 어조로 그 사실을 해명한다.

4. 개인 충고가 3차에 미치되 참회개과하지 아니하면 2인 내지 3인의 동지가 협력하여 충고한다. 그 충고가 3차에 이르러도 참회개과하지 아니하면 사유를 감찰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긴급 사건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충고 절차를 끊지 아니하고 바로 감찰원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다.

5. 동지의 과오를 알고도 충고 또는 보고를 아니한 자나 또는 과오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자는 친애의 도를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6. 충고하는 동지에게 불평을 가지며 색원 대질하고 충고하는 말을 무조건 무시하는 자는 친애의 도를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7. 동지간에 지식의 우열이 있을 때에는 그 우한 자가 열한 자를 절대로 하시하지 아니하고 힘미치는 대로 지식을 알려 주는 데에 노력한다.
8. 어떠한 묘법이나 견문이 있을 때에는 기회를 따라 모든 동지에게 전하여 주는데에 노력한다.
9. 동지간에 혹 병고가 생길 때에는 가족의 정의에 의하여 힘 미치는 대로 정성껏 살펴 준다.
10. 동지간에 애경재상 등이 있을 때에는 힘 미치는 대로 돋는다.

제27조(수덕회) ① 전무출신 상호간에 친애의 도를 지도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수덕회를 둔다.  
② 수덕회에 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 제 4 장 사가와의 관계

제28조(사가의 책임) 전무출신은 가정사를 전무출신 승낙인이나 배우자 기타 가족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가족대동) ① 전무출신이 교직수행의 필요에 따라 가족을 도량 안에 대동할 수 있다.

다만 교정원장 또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동한 가족은 당해 교당·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별도의 직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③ 대동한 가족이 당해 교당과 기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급료를 주거나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제30조(정토회) ① 남자 전무출신 권장부인들로 정토회를 조직하여 상호간의 친목과 공부 사업을 장려하며 관계된 전무출신의 공헌에 협조하게 한다.

② 정토회원의 협조와 공적에 따라서 특별시상을 할 수 있다.

③정토회에 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 제 5 장 처 우

제31조(근무성적) 근무성적은 품과와 봉직경력 그리고 근무실적을 기준하여 책정한다.

제32조(용금.생활지원금.급여) ①용금,급료를 품과와 봉직경력등을 기준하여 책정하고 생활지원금은 생활정도에 따라 책정할 수 있다.

②용금 및 생활지원금과 급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학비보조) 14년이상 봉직한 전무출신의 은자녀로서 교단내·교육기관에 입학하였을 때는 그 납입금을 교단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은자녀는 1인에 한한다.

제34조(은족결의) ①생자녀가 없는 전무출신은 은자녀를 정하여 노쇠시 봉양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은족결의는 은족규정에 따른다.

제35조(요양과 휴양) ①전무출신은 복무 중 발병하거나 일정기간 봉공 후 치료와 휴양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요양 및 휴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요양이나 휴양에 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제36조(노후정양) ①전무출신으로서 정년이 되면 현직에서 퇴임하여 수도원이나 수양원에서 정양을 한다.

②수도원이나 수양원에 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장) 요양·휴양·정양에 대하여는 제32-1조항 제1호와 제2호는 교단이 보장하고 제3호는 본인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향례) ①전무출신이 열반하면 그 공헌 정도에 따라 교단은 상장을 부담하고 영모전에 입묘하여 조상으로 향례한다.

②상장은 교례에 따른다.

제39조(후원기관) ①전무출신에 대한 경제적 후원을 위하여 후원기관을 둔다.

②후원기관에 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 제 6 장 상벌 및 성적

제40조(상벌) 전무출신으로서 교직수행 중 특별공로나 과오가 있으면 상벌규정에 의하여 시상과 징계를 시행한다.

제41조(직무정지) ①교정원장은 전무출신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기타 사유로 교단의 손실이 예상될 때는 그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교정원장은 직무정지의 사실을 즉시 감찰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찰원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규명하여 징계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없을 때는 즉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2조(사면·복권) 징계를 받은 자는 사면 복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초과분.미달액) 근무지의 특수성에 따라 정한 바 기준용금 및 생활지원금과 급료를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분을 헌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액이 근무성적기준에 미달한 전액은 성적으로 계상한다.

제44조(성적) ①전무출신은 공부와 사업의 실적과 생활을 사정하여 성적으로 계상하고 그 성적에 따라 대우한다.

②전무출신의 공부·사업성적사정은 교도 법위사정규정과 교도사업성적 사정규정에 따른다.

## 제 7 장 보 칙

제45조(특별봉사) ①신심과 공심이 투철한 재가교도로서 일정기간 전무출신에 준하는 봉사를 원할 때에는 교정원장의 승인으로 교직에 근무할 수 있다.

②그에 따르는 처우는 용금 지급과 시상에 한한다.

③6년 이상 근무 중 열반한 자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는 수위단회의 승인을 받아 전무출신으로 추인할 수 있다.

제46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교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기 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①원기 77년 이전의 전무출신은 원기 77년 9월 30일 이전에 종별과 품과를 선택하고 품과에 대하여는 수위단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종법사가 인정한다.

②전항의 시행에 따라 제6조, 제7조, 제31조, 제32조, 제37조, 제43조의 규정된 내용은 개정 이전 현행 전무출신규정의 해당조항에 따르고 제7조 1항 각호 및 품과선택이 완료된 3개월 후인 원기 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6. 전무출신 규정 개정 ( 79. 1. 13 교규 제102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헌 제18조에 의거하여 전무출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성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무출신이란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신) 전무출신의 정신은 다음과 같다.

1. 시방세계 육도사생의 전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고, 전체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으로 안다.
2. 교단과 인류와 생령을 위하여 남김없이 심신을 바친다.
3. 삼학팔조와 사은사요를 몸소 실천하여 전인류에게 전하여 줄 천직을 부여 받았다.
4. 진리와 법과 공을 위하여는 신명을 다한다.
5. 오직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과 자비심으로 충만된 삶으로 산다.

제4조(자세) 전무출신은 다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신성이 견실하여 진리와 법과 스승 이외에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한다.
2. 사가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그 임무에 전일한다.
3. 임무의 취지가 급료 여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감으로써 이행한다.
4. 교단의 명령에는 호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지정업무에 충실했다.
5. 공부, 사업 양 방면으로 항상 공덕을 나둔다.

## 6. 기타 전무출신에 관한 규정을 일일이 준수한다.

제5조(솔성요론과 계문준수) 전무출신은 솔성요론과 계문을 반드시 지킨다.

제6조(품과) ①전무출신 제도에 다음과 같은 품과를 두어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교단에 공헌하게 한다.

1.교무:교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화를 비롯한 교단의 모든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2.도무:도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행정·자선·연구·기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3.덕무:덕무의 자격을 취득하여 근로와 기능 등의 분야에서 전무하는 자

②전무출신의 품과별 자격 검정에 관하여는 교규로 정한다.

제7조(교육·훈련) ①전무출신은 전무출신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화 및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하여는 훈련규정에 따른다.

## 제 2 장 자 격 취 득

### 제 1 절 지 원

제8조(지원자격) ①전무출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본교의 신앙에 대하여 신근이 확실한 자

2.심신이 건강한 자

3.세상에 드러난 악행이 없는 자

4.교령이 정한 품과별 지원 자격에 해당된 자

②종법사의 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구비서류) 전무출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소속 교당의 교무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1.전무출신 지원서

- 2.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3.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4.건강진단서
- 5.기타 지정 서류

## 제 2 절 심 사

제10조(예비심사) 소속교당·기관에서는 전무출신 지원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교당심사와 교구심사를 거쳐서 교무나 기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정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추천·보증) ①전무출신 지원자를 추천 또는 보증할 때에는 전무출신 지원자의 신성 및 신분 등을 일년 이상 충분히 고찰한 후에 한다.  
②전무출신 추천인과 보증인은 지원인의 장래에 대한 보증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중앙심사) ①전무출신 지원서류가 접수되면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지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중앙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자와 의논하여 품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심사에 관하여는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규칙에 따른다.

제13조(등록) ①중앙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지원자는 예비전무출신 지원자격을 갖는다.  
②예비전무출신 지원자격을 가진 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검정에 합격하거나 또는 합격하여 의무복무를 시작함으로써 예비전무출신 명부에 등록된다.

## 제 3 절 교육 및 서원

제14조(교육) 예비전무출신은 교육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의무복무를 이수해야 한다.

제15조(승인) 예비전무출신으로서 정한 바 교육·훈련과정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자는 전무출신서원서를 종법사에게 제출하여 수위단

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서원의식) 전무출신 서원을 승인 받은 자는 법신불 사온전에 서원 의식을 거행한다.

### 제 3 장 복무 및 생활

제17조(근무처) 전무출신은 교단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단의 발전상 필요한 때에는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은 후 종 법사의 명에 따라 교단 이외의 기관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18조(인사) 전무출신의 인사는 교헌에 규정된 이외에는 인사임면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휴역) 전무출신은 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 휴역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퇴) 전무출신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퇴할 수 있다.

다만 자퇴로 인하여 정계사유가 소멸되지는 아니한다.

제21조(정년퇴임) 정년은 68세로 한다.

다만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원에 따라 소정의 심의를 거쳐 정년 퇴임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복제) ①전무출신은 의식집행과 평소 생활에 있어서 소정의 복제를 갖추어야 한다.

①복제에 관하여는 교규로 정한다.

제23조(생활의무) ①전무출신은 정신일체와 생활일체를 위하여 당해 기관·교당에서 공동생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 사가 생활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전무출신은 도량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전무출신은 생활과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직자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④공동생활에 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금지 및 제한) ①전무출신은 교단의 직무 이외에 다른 사업을 병영

하지 못한다.

② 전무출신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전무출신은 상급자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④ 전무출신은 교단의 교직 이외에는 다른 직무를 겸대하지 못한다.

다만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직무로써 교화상 필요할 때에는 교정원장 또는 소속 교구장(기관장)에게 신고한 후 겸대할 수 있다.

⑤ 전무출신은 교화상 필요에 따라 교단의 방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비정치적·비영리적인 단체에 한하여 교정원장 또는 소속 교구장(기관장)에게 신고한 후 가입할 수 있다.

⑥ 전무출신은 교화상 필요에 따라 교단의 방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비정치적·비영리적인 단체에 한하여 조직할 수 있으며 단체의 조직 및 등록은 단체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친애의 도) 전무출신은 다음의 친애의 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1. 전무출신 상호간에는 지중한 윤기와 정리로써 선은 서로 권장하고 격려하며 악은 서로 경계하고 깨우쳐 준다.

2. 동지간에 혹 과오가 있을 때에는 간격 없는 애정으로써 친절히 충고하며 동시에 그 과오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3. 충고를 받은 자로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참회개과하기로 다짐하고 절대로 불평·수치·혐오의 마음을 두지 않기로 한다.

다만 사실이 없는 일으면 온화한 어조로 그 사실을 해명한다.

4. 개인 충고가 3차에 미치되 참회개과하지 아니하면 2인 내지 3인의 동지가 협력하여 충고한다. 그 충고가 3차에 이르러도 참회개과하지 아니하면 사유를 감찰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긴급 사건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충고 절차를 끊지 아니하고 바로 감찰원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다.

5. 동지의 과오를 알고도 충고 또는 보고를 아니한 자나 또는 과오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자는 친애의 도를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6. 충고하는 동지에게 불평을 가지며 색원 대질하고 충고하는 말을 무조건 무시하는 자는 친애의 도를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7. 동지간에 지식의 우열이 있을 때에는 그 우한 자가 열한 자를 절대로 하시하지 아니하고 힘미치는 대로 지식을 알려 주는 데에 노력한다.

8. 어떠한 묘법이나 견문이 있을 때에는 기회를 따라 모든 동지에게 전하여 주는데에 노력한다.

9. 동지간에 혹 병고가 생길 때에는 가족의 정의에 의하여 힘 미치는 대로 정성껏 살펴 준다.

10. 동지간에 애경재상 등이 있을 때에는 힘 미치는 대로 돋는다.

제26조(수덕회) ① 전무출신 상호간에 친애의 도를 지도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수덕회를 둔다.

② 수덕회에 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 제 4 장 사가와의 관계

제27조(사가의 책임) 전무출신은 가정사를 전무출신 승낙인이나 배우자 기타 가족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가족대동) ① 전무출신이 교직수행의 필요에 따라 가족을 도량 안에 대동할 수 있다.

다만 교정원장 또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동한 가족은 당해 교당·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별도의 직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③ 대동한 가족이 당해 교당과 기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급료를 주거나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제29조(정토회) ① 남자 전무출신 권장부인들로 정토회를 조직하여 상호간의 친목과 공부 사업을 장려하며 관계된 전무출신의 공헌에 협조하게 한다.

- ②정도회원의 협조와 공적에 따라서 특별시상을 할 수 있다.
- ③정도회에 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 제 5 장 치 우

제30조(근무성적) 근무성적은 품과와 봉직경력 그리고 근무실적을 기준하여 책정한다.

제31조(급여) ①전무출신의 급여는 품과와 봉직경력 생활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할 수 있다.

- ②급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령으로 정한다.

제31-1조(급여의 형태에 따른 구별) 교단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을 두어 급여의 문호를 열어갈 수 있다.

- 1.용금을 받는 자.
- 2.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3.급료를 받는 자.

제32조(학비보조) 14년이상 봉직한 전무출신의 생은자녀로서 교단내·교육기관에 입학하였을 때는 그 납입금을 교단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은자녀는 1인에 한한다.

제33조(은족결의) ①생자녀가 없는 전무출신은 은자녀를 정하여 노쇠시 봉양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은족결의는 은족규정에 따른다.

제34조(요양과 휴양) ①교단은 전무출신의 질병치료와 휴양을 위하여 요양 및 휴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요양이나 휴양에 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후정양) ①전무출신으로서 정년이 되면 현직에서 퇴임하여 수도원이나 수양원에서 정양을 한다.

- ②수도원이나 수양원에 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제36조(보장) 요양·휴양·정양에 대하여는 제31-1조항 제1호와 제2호는 교

단이 보장하고 제3호는 본인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향례) ① 전무출신이 열반하면 그 공헌 정도에 따라 교단은 상장을 부담하고 영모전에 입묘하여 조상으로 향례한다.

② 상장은 교례에 따른다.

제38조(후원기관) ① 전무출신에 대한 경제적 후원을 위하여 후원기관을 둔다.

② 후원기관에 대하여는 교령으로 정한다.

## 제 6 장 상벌 및 성적

제39조(상벌) 전무출신으로서 교직수행 중 특별공로나 과오가 있으면 상벌 규정에 의하여 시상과 징계를 시행한다.

제40조(사면·복권) 징계를 받은 자는 사면 복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을 수 있다.

제41조(후생현금) ① 모든 전무출신은 본인이 수령한 급여의 일부를 후생현금으로 헌납하여야 한다.

② 후생현금의 책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령으로 정한다.

제42조(성적) ① 전무출신은 공부와 사업의 실적과 생활을 사정하여 성적으로 계상하고 그 성적에 따라 대우한다.

② 전무출신의 성적 사정은 교도성적 사정 규정에 따른다.

## 제 7 장 보 칙

제43조(특별봉사) ① 신심과 공심이 투철한 재가교도로서 일정기간 전무출신에 준하는 봉사를 원할 때에는 교정원장의 승인으로 교직에 근무할 수 있다.

② 그에 따르는 처우는 용금 지급과 시상에 한한다.

③ 6년 이상 근무 중 열반한 자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는 수위단회

의 승인을 받아 전무출신으로 추인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교령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원기 78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무출신에 대해서는 제6조를 원기 79년 7월 1일 부터 적용하며, 이에 해당되는 전무출신은 제6조의 품과를 선택하고 이를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③(경과조치) 제30조, 제31조, 제31-1조, 제36조, 제42조에 규정된 내용은 원기 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